

## 양돈장 환경피해분쟁 조정방법 및 사례

-홍 보 부-

### 1. 서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金永吉)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1991. 7. 19에 업무를 개시한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1994년말까지 55건의 분쟁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는 양돈장과 관련된 분쟁사건이 매년 3건정도 발생되고 있어 양돈업계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다음은 양돈장이 피해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을 먼저 약술하고 사례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2.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

사업활동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및 소음·진동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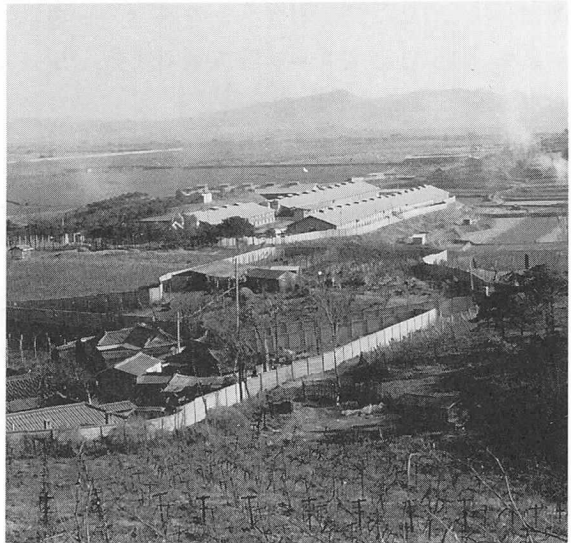
조정제도 시행 이전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였으나 대체로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사업체에 비하여 경제력이 약하고 오염발생원인과 피해발생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능력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사실상의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청구금액에 따라 약간의 수수료를 정부수입인자로 납부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된 사무국 직원이 현지조사, 문헌자료조사, 전문가의 견수렴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면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조정 또는 재정절차를 진행시켜 인과관계 인정여부와 피해정도, 피해자 과실유무 등에 따른 배상액 수준 등을 제시 또는 결정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에는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이 있는데 알선은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당사자간 의견교환에 의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며 조정은 사실조사와 인과관계 규명 등을 거쳐 당사자간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쌍방이 자기주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하게 하거나 조정안을 의결하여 양당사자간에게 30일간의 기간을 두고 수락권고를 하는 것이다. 알선과 조정은 시설의 개선, 조업조건의 변경 및 피해배상 등을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재정은 사실조사와 심문 등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손해배상책임과 배상액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준사법적 절차로서 피해당사자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어 있다.



### 3. 양돈장이 피해자였던 사례 두가지

#### 가. 경인고속도로 건설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돈 피해분쟁사례

신청인 장민기씨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84년부터 양돈장을 설치 운영하였는데 두산건설(주)가 양돈장 인근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암반발파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로 인한 발파진동으로 인근의 주택이 균열됨에 따라 균열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주었으나, 양돈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장민기씨의 협상은 거절하였으므로 장민기씨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피해자는 발파작업이 시작된 다음달부터 모든 생산성이 현저히 감소되어 특수 영양제 투여와 임신에 관계하는 호르몬 투여 및 중용돈의 교체 등 노력을 계속해 오던 중, '93년초 신문지상에 소개된 분쟁위의 재정결과를 보고 발파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재정신청했다고 주장하며 규격돈 생산차질로 인한 피

해로 186,864천원과 모돈교체에 따른 피해로 15,694천원을 합해서 총 202,558천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인 정한균(두산건설<주>대표)씨는 피해 양돈장이 위치가 발파현장으로 부터 최소 540m 이격되어 있으며, 지발당 300kg이하의 화약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지점의 최대 진동속도를 0.149cm/sec이하로 유지했으므로 진동에 의한 돼지의 불임등의 피해는 발생치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현장 주위에는 사격장과 차량통행량이 많은(1일 3,000대이상) 지방도로가 있으며, 피해농원 상공이 비행기의 정기항로임을 감안할 때 이들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일 것이고 또한 재정신청인이 발파가 계속되던 지난 2년동안 적극적인 보상요구없이 발파공사 종료 8개월을 앞두고 재정을 신청한 것은 정확한 원인규명없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유사한 조정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적용하려는 의도이며 피해보상 요구액 산정도 각료성이 결여된 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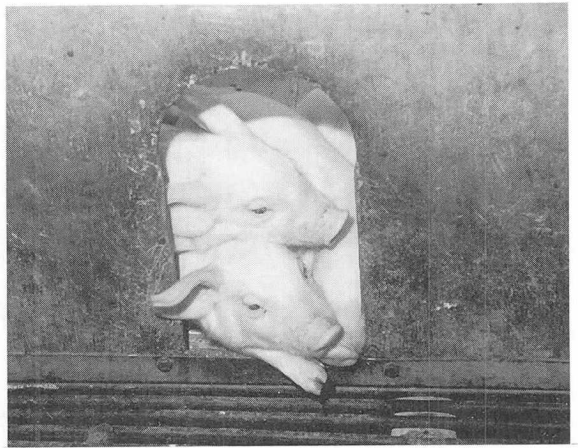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회에서는 곧 고속도로 건설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근 양돈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을 위촉하였다.

그 후 한달 지난후에 전문위원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발파 소음·진동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파 진동에 의해 양돈장 인근주택에 수평균열이 간 점등을 고려할 때 발파에 의한 진동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진동에 의한 양돈피해 인과관계에 대해서, 돼지·노루 등 쌍재(우재, 발톱 2개)동물은 진동에 매우 민감하여 미진에도 놀라 도망치는 등 반응을 보임으로 동발파진동에 의해 돼지가 피해를 입었다면 매우 놀라는 등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 건물에 피해를 줄 정도의 진동이라면 돼지붙임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발파소음은 발파지점 및 양돈장간에 산이 있어 정확한 소음도는 예측할 수 없으나, 동 소음에 의한 피해는 발생치 아니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국내외 관계문헌을 참고하고 인과관계를 검사한 결과 발파진동으로 돼지의 유산 또는 불임 등의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해배상액 산정은 피해자가 제시한 가격과 피해기간 중 축협실제평균가를 비교하여 적정가격을 적용하고 모돈 사육두수, 피해기간 중 자돈생산실적 등 자료확보가 곤란한 부분은 피해자가 제시한 자료를 인정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참고로 하여 비육돈 생산차질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115,757,289원, 모돈교체 피해액은 15,428,000건으로 총 131,185,289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사건의 결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기관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번 피해사건은 '92.12.21일 경기도 용인군 지산골프장 건설공사시 진동으로 인한 양돈피해를 인정한 사건에 뒤이어 피해를 인정한 사건으로서 두 사



건은 비용상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다.

#### 나. 경기 용진군 시화지구 토석(土石) 채취장의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돈 피해분쟁 사건

시화지구개발사업 중 시화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돌덩이 채취시의 발파폭음 및 진동과 발파된 돌덩이 등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신청인의 축사 옆을 질주함에 따라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신청인의 돈사안에 어미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사산, 유산, 불임됨으로써 이에따른 자돈생산 차질, 종돈폐기 및 자돈의 육성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향후 공사가 계속됨으로 인한 예상피해에 대한 배상을 '94.1월 용진군청 환경보호과장 및 대부면 재무계장과 함께○○건설(주) 사무소에 가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으며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결렬됨에 따라 '94.6.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387,700,0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정○○은 피신청인들(○○공사, ○○진흥공사, ○○건설(주), ○○토건(주)에 시화방

조제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토석채취장(황금석산) 발파시 과다한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함에 따라 공사장의 발파폭음 및 진동과 발파된 돌덩이 등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축사걸을 질주함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93년경부터 돈사안의 종빈돈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사산, 유산, 불임되어 자돈생산 차질 및 중돈폐기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돼지는 먹고자고, 먹고자고 해야 하는데 계속되는 소음·진동으로 공포와 긴장이 계속되어 성돈으로 자라기까지 30일의 지연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신청인들은 건설부 고시 제220호(관보 제1065호, '87.6.8) "반월 특수지역 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업 외곽시설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공사용 진입도로 총연장 19,946m에 신청인 축사가 편입되어 토지 및 돈사와 양돈업 영업권에 대한 보상(총 24,543,000원)을 한 후('88년 8월) 착공하였으므로 양돈업권에 대한 손실 보상은 소멸되었으며, 피해발생 지역이 토석 등 운반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과 황금석산 발파시 폭음 및 진동이 있을것을 충분히 알면서 공사용 도로 인접토지에 돈사4동을 사업시행자와의 사전협의없이 신축('88년도 10월)하여 양돈업을 재개하였음은 다시 보상받기 위하여 양돈업을 계속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해발생 주장은 부당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평일에도 외래관광객 승용차등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이므로 공사용 차량만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현재까지 석산발파로 인한 가옥피해 등 민원이 특별히 제기된 바 없었으며 토석발파시는 소발파로 시행하였므로 발파로 인한 양돈피해는 없으며, 공사착공이래 현재까지 공사시설계획서 및 관련 지방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3개월에 걸쳐 전문위원회의를 통해 인과관계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1차, 2차에 걸쳐 심사보고서와 조정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바가 큼에 따라 현지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문헌을 참조하여 공평성 있게 조사하였다. 이렇게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한 결과 향후 계속 공사에 의한 예상피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일한 공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피해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유사산 및 불임에 의한 자돈손실, 공태돈손실, 도태돈손실과 자돈의 성장지연손실만 인정하며 신청인이 조정신청('94.6.9) 이전에 ○○건설('94.1.11)과 ○○○진흥공사('94.2.26)에 각각 피해배상을 요청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해내역이 상이하여 피신청인은 배상액이 최소로 되는 ○○건설에 제출한 민원을 근거로 할 것을 요청했으나, 그것은 방조제공사완공일('94.1.24) 이전에 제출되어 피해가 진행중이었던 상황에서 피해내용과약이 부정확했을 것이므로 방조제공사가 완공된 후 농어촌진흥공사에 제출한 민원을 근거로 피해인정 범위를 정하고 환경 피해분쟁조정 위원회는 자돈의 성장지연손실 3,476,250원 등 총 3,476,250원의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보상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승복하므로 이 사건은 해결되었다.

- 문의 :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전화 : (02)504-9303~5
- FAX : (02)504-9306